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666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가산세 17,182,5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인 D은 2013. 12. 29.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은 2014. 3. 5.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03호로 D의 자필유언서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고, 2014. 4. 10. 검인절차가 종료되었다. 위 유언서에 'D은 원고에게 대구 중구 E 대 343.8㎡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인 2013. 12. 29.로부터 60일을 지나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15,555,8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26,6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언으로 증여받았다. 유증은 상속과 같은 사인행위이므로 상속에 해당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이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되어야 하고, 위 취득한 날은 D의 사망일인 2013. 12. 29.이 아닌 원고 등이 D의 유언서를 발견한 '2014. 3. 5.' 또는 유언서에 대한 검인절차 종료일인 '2014. 4. 10.'로 산정하는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타당하다. 원고는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기한이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한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6138 판결 참조).

원고는 D의 손녀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정한 상속인이 아니고, 사인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D의 사망일인 2013. 12. 29.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 6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고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3. 5. 유언서를 발견하였다거나, 유언서 검인절차가 2014. 4. 10. 종료되었다면,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 취득일인 2013. 12. 29.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2014. 4. 2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사인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신고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09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